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7915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도축장 위생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2006년 9월 25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1) 가축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함.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대상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업무의 효율

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안 제12조의3 신설)

(1) 닭·오리고기 등이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재오염이 우려되고, 수입축산물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짐.

(2) 의무적으로 포장하여야 할 축산물의 종류를 닭·오리고기로 하고, 포장 대상 영업자를 닭·오리 도축업의 영업자로서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자로 함.

(3) 닭·오리고기의 유통과정에서의 재오염이 방지되고, 수입축산물과의 구별이 용이하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도축장의 위생검사 인력이 부족하여 검사에 어려움이 많고,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을 영업주가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2) 포유류도축장에서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을 정부에서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한 사항을 정함.

(3) 도축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축업 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4)

(1) 과태료 상한액이 낮아 축산물 위해사범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고, 축산물 포장유통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함.

(2) 과태료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축산물 포장유통의무 위반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3) 축산물 위해사범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명중 ‘위원회’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위원회’를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하 이 조에서 ‘적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사업

2. 적용사업장등의 사후관리사업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는 닭·오리의 식육으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의 영업자 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보내용 : 당해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 2. 통보기한 : 당해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보내용 :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 2. 통보기한 :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축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장’

이라 함은 도축장 및 집유장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을 ‘자체검사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전의 제3항)중 ‘검사보조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중’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으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호와 같다.

1. 검사관이 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관이 행하는 실험실검사의 보조업무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 영업장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제18조의2를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검사보조원의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 : 40시간 이상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 : 24시간 이상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 매년 4시간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 경비

② 검사보조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 본문중 ‘식육’을 ‘식육 또는 포장육’으로 한다.

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축업의 경우 :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 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또는 냉동·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 냉동·냉장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9조제2항·제8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법 제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시·도지사’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을 말한다.

제26조의4(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평가의 대상
 -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축산물
 - 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다. 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축산물

라. 새로운 원료·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나. 축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위험성 결정과정·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당해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검역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위생 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역원장이 부담한다.

다. 농림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 또는 시험·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위해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해평가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성분규격 및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한시적 인정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 등의 고시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7.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8. 법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통보·이의신청의 접수·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사 결과 통보

9.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중 검역원 소속 공무원의 검사관 임명

10.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

11.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결과와 수출입실적 등의 보고 및 검사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수거 명령

12.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명령

13.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

14.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15.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제14호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한한다)

16. 법 제34조에 따른 생산실적 등의 보고 명령

17.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 명령

18.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 명령

19.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20.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21. 법 제47조(제5호의2를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비고의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유업의 경우 자체검사원의 총원은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의2 제5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1일 평균 도축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2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호	300
2.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2호	100
3.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다. 그 밖의 영업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	300 150 20
4.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가.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다. 그 밖의 영업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	150 100 10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도축업에 한한다)	법 제47조제1항제4호	300
6.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도축업에 한한다)	법 제47조제1항제4호	150
7.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2	100
8.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3	100
9. 법 제25조 또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6호	30
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7호	30
10의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7호	100
11.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 에 종사하게 한 자 가.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법 제47조제1항제8호	50 30 30 20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8호	100
1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9호	30
1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 업에 종사하게 한 자 가.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2)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법 제47조제1항제10호	30 20 20 10
15.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체검사원 을 그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0호	10
16.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1호	50
17.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2호	200
1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법 제47조제1항제13호	50

※ 비고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